

독립채산기관 운영규정

제정 2020. 06. 30

개정 2021. 11.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독립채산기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 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독립채산기관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 재원을 스스로 창출하여 부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분) 독립채산기관은 학사조직과 연구조직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신설 및 지위부여

제4조(설립) ① 독립채산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붙임1의 학사조직 및 연구조직 신설 절차를 따른다.

② 조직을 독립채산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다.

1. 조직 :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2. 인력 : 인력 확보 및 활용계획
3. 공간 : 공간 확보 및 활용계획
4. 재정 : 재정 확보 및 집행계획

제5조(지위부여) ① 독립채산기관의 자격유지, 자격상실, 자격회복 등 지위 부여에 관한 경우와 법인승인연구소가 독립채산기관의 지위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2의 절차를 따른다.

② 독립채산기관 지위부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총장이 정한다.

③ 독립채산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학사조직: 철강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기술경영과정
2. 연구조직: 인공지능연구원, 생명공학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포스텍-가톨릭대의생명공학연구원, 미래IT융합연구원, POSTECH-Apple Developer Academy and Apple R&D Manufacturing Accelerator(PAA²)(개정: 2021.11.29.)

제 3 장 조직 및 직제

제6조(조직) 독립채산기관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부, 팀 등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주요직제) ① 학사조직인 독립채산기관에는 대학원장 또는 주임교수를 두고, 대학원장 또는 주임교수는 독립채산기관을 대표하고 관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구조직인 독립채산기관에는 연구소장을 두며, 연구소장은 독립채산기관을 대표하고 관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조직인 독립채산기관에는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부소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독립채산기관에는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부서장(부장/팀장 등)을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소관 분야 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장 보 직

제8조(임명) ① 독립채산기관의 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학사조직의 경우는 직제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독립채산기관의 부소장과 하부조직의 부서장은 독립채산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직원에 대해서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보직임용기준) ① 부소장과 하부조직의 부서장은 교원, 5급 이상의 직원, 책임급 이상의 연구계약직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보직수당) ① 독립채산기관의 장을 맡은 자에 대하여 대학의 규정에 따라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부소장과 하부조직의 부서장을 맡은 자에 대하여 대학의 보직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행정단위 부서장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운 영

제11조(운영) 독립채산기관의 장은 기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받고 그 운영에 있어 책무성을 가진다.

제12조(재정) ① 독립채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원을 충당한다.

1.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등 자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및 입시 수험료 수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연구보조금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협력사업, 장비임대, 시설/공간임대 등)
4. 타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자체 자원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② 독립채산기관은 대학에서 정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역은 붙임 3과 같다.

제13조(재정의 관리) ① 독립채산기관의 장은 독립채산기관의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독립채산기관의 장은 기관의 자체 발전계획에 기반하여 자체 적립금 잔액 소진 및 지불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독립채산기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14조(인력) ① 독립채산기관의 장은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독립채산기관의 장은 중장기 재정계획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대학에서 승인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독립채산기관 소속 연구계약직의 경우 ‘연구계약직 인사세칙 제10조(계약기간의 제한)’를 따른다. 다만, 외부수탁과제 수행인력을 제외한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계약직은 통산 2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④ 독립채산기관의 장은 재정 현황 및 대학의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소속 인력에 대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독립채산기관의 인사관리는 대학의 인사관련 제규정 및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5조(공간) 독립채산기관의 운영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공간에 대해서 사용 및 조정 권한을 가지며, 건물 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은 필요한 경우 독립채산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공간에 대해 사용 및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① 각 독립채산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교원 초빙, 연구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하기 위해 독립채산기관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독립채산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독립채산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외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6 장 평 가

제17조(평가) ① 독립채산기관의 평가는 설립목적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독립채산기관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평가는 2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사조직인 독립채산기관은 교무처, 연구조직인 독립채산기관은 기획처가 평가를 주관하고, 세부절차는 붙임2의 자격 유지 및 상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따른다.

④ 학사조직인 독립채산기관은 학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독립채산기관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총장은 해당 독립채산기관에 대해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독립채산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경영평가위원회) ① 연구조직인 독립채산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경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경영평가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19조(평가 결과) ① 총장은 17조에서 실시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독립채산기관 자격 유지 여부를 정한다.

② 독립채산기관의 장이 제 12조와 13조에서 정하는 재정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총장은 제 17조 ③항의 평가절차없이 독립채산기관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제20조(자격상실 후속조치) 제17조 ②항에 의하여 독립채산기관 지위 박탈 시 후속조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 기관에서는 진행 중인 제반 사업과 조직, 인력, 자금, 건물 및 시설, 자산 등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사조직인 독립채산기관은 교무처, 연구조직인 독립채산기관은 기획처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기관의 후속 조치계획의 실시과정을 관리 감독하며 조치가 완료되면 기획처에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7 장 기 타

제21조(세칙 및 지침) 독립채산기관은 '제규정 관리규정'에 따라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

하여 대학이 정한 범위 내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운영세칙과 지침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독립채산기관은 대학 조직의 일부로 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제규정과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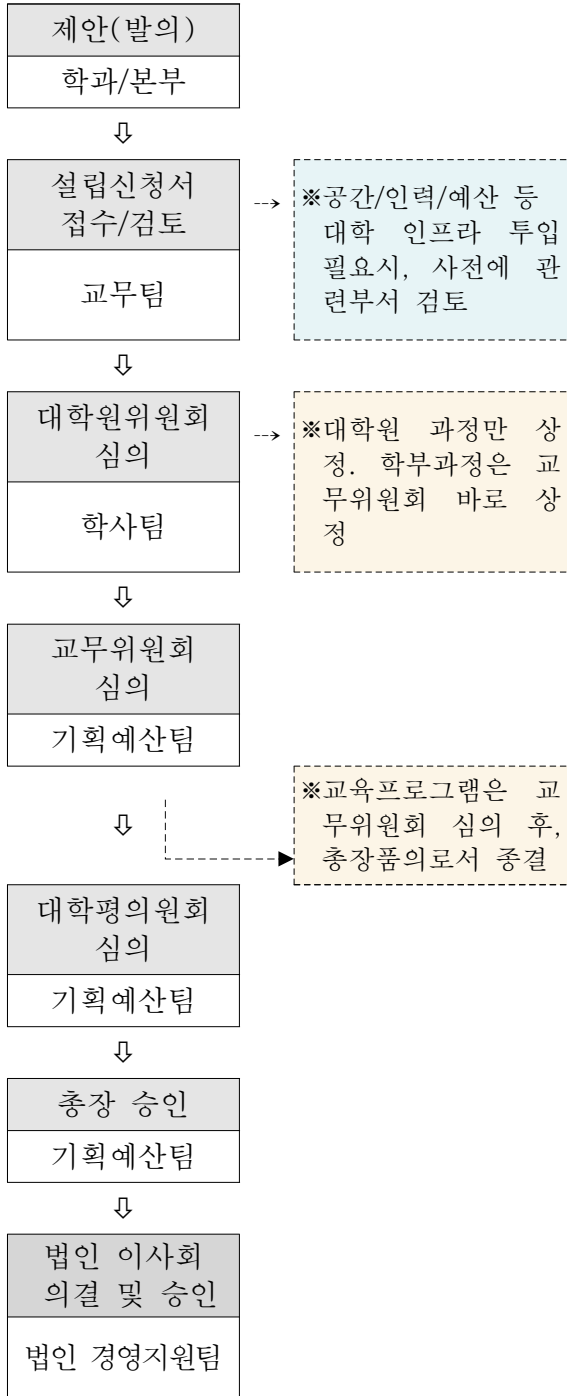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6월 30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인력) 제3항은 본 규정 제정 시점부터 신규임용되는 연구계약직에 한해서 적용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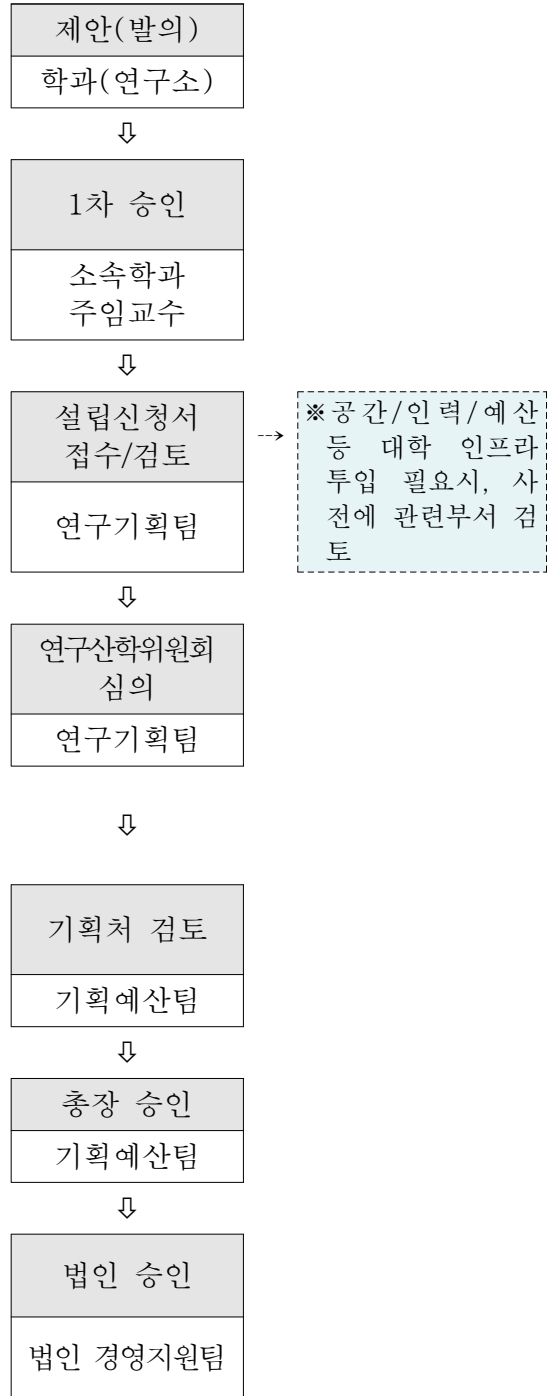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붙임1) 독립채산기관 신설 절차

● 학사조직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교육프로그램)



● 연구조직(법인승인연구소)



(붙임2) 독립채산기관 지위부여, 자격유지 및 상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평가자료 제출안내	
학사조직	연구조직
교무팀	기획예산팀

↓

평가자료 제출	
당해 평가대상 조직	

↓

평가주관 및 평가자료 접수	
학사조직	연구조직
교무팀	기획예산팀

↓

종합검토 및 평가	
학사조직	연구조직
교무팀	경영평가위원회

↓

독립채산기관 지위 유지 및 상실 결정	
총장	

↓

최종평가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기획예산팀	

(붙임3) 독립채산기관 재정운영부담 세부내역

집행항목	세부 집행내역	독립채산기관 부담내역
인건비	해당 조직 소속의 교원(전임 및 비전임),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연구계약직 및 기타 인력의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 단, 사학연금 가입 직원의 퇴직 수당은 대학에서 전액 부담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독립채산기관에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
관리운영비	일반관리운영비(조직운영 관련 일반경비)	
학생경비	장학금, 기타학생지원비	
복리후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개인연금보조비, 주거안정수당, 건강검진비	
Utility (실사용료)	주거시설(교수아파트, 연구원아파트) 사용료, 공간사용료, 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통신비, 청소비, 경비용역비	실제사용료 또는 대학전체 건물에 대한 해당건물의 비율에 따른 부담금